

# 소송업무규정

제정 2016.9.07. 제51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(재)김해시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“소송사무”라 함은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, 행정소송, 직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형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.

**제3조(주관부서)** ① 모든 소송사건은 이사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, 소송수행업무에 관한 그 지휘 감독과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관장한다.

② 소송사건의 수행은 사업지원팀장이 한다.

## 제2장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

**제4조(법률고문)** ① 재단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, 재단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한다.

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재단회계년도와 같이하되, 연도 중간에 위촉한 경우의 임기는 연도말에 종료한다. 다만,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 시로 한다.

④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5조(소송대리인)** ① 재단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경우 법률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해당 소송이 소액사건, 단독사건 등으로 그 성격상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해당 사건의 담당자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고문변호사의 수당)**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**제7조(소송비용 등)**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의한다.

###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

**제8조(사건의 접수)**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때에는 해당사건 처리대장(별지 제1호 서식)에 등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소송제기의 요청)** 재단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에게 제소 결심을 받아야 한다.

1. 제소 이유서
2. 소송 목적물의 표시
3. 소송 물가액 및 당사자 표시
4. 판결을 구하는 내용
5. 경위서
6. 증빙서류
7. 기타 참고사항

**제10조(제소결정)**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단의 운영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사건은 이사장이 결정한다.

1. 소송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
2. 당사자 확인
3. 증거자료 조사
4. 법률고문의 의견

**제11조(피소사건의 응소 결정)**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.

② 답변서,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.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소송대리인의 선임)** ① 이사장은 제소 및 응소결정 후 지체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(소속직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)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교부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소송대리인의 직무)** 소송대리인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소송수행결과 보고서(별지 제4호서식)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
2.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
3. 증거자료 제출
4.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선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
5.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

**제14조(소송보조자)** ① 이사장은 해당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소송보조자(이하 “보조자”라 한다)를 지명하여야 한다.

② 보조자에게는 서약서(별지 제5호서식)를 징구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보조자의 직무)** 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,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, 조사, 제출
2. 필요시 변론기일,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예의 출석 또는 입회 시 보고
3.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

## **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**

**제16조(소송판결에 대한 조치)** 급부판결 등에 있어 재단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 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결손처분)** 강제집행 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, 시효완성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18조(패소판결에 대한 조치)**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재단의 운영 및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패소 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상소의 포기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.

1.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
2.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

**제20조(임의의 변제)**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변제 할 수 있다.

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
1. 청구서(별지 제6호서식)
2. 판결문 정본(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포함)
3. 인감증명서
4. 위임장(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5. 합의서(별지 제7호서식)

**제21조(소송비용 청구)** 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의 규정에 의거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아래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.

1.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
2. 기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재단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구상권 행사)**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인행위자인 직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.

## 제5장 소송사건 수행중인 등의 실비변상

**제23조(증인 등의 실비변상)**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신청하는 증인, 참고인, 감정인(이하 “증인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4조(실비변상의 범위)**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, 일비, 식비, 숙박료로 한다.

**제25조(실비변상액)**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**제26조(지급)**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같음한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27조(강제집행 보전 조치)** 사업지원팀장은 장래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입금절차의 순위)** 소송에 의한 채권회수에 있어서는 「민법」 제497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, 법정이자, 원금의 순위로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사건기록)** 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, 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.

② 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. 다만, 보존처분, 구상권 행사, 소송 비용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.

③ 보전처분, 구상권행사, 소송비용회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되 원본안과 상호 관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.

## 부 칙(2016.9.07. 제51호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(제7조 관련)】

### 소송비용 지급기준

구분 소송별	지 급 기 준		승소사례금	
	내 용	착 수 금		
민 사	1. 신청사건	50만원이내	없음	
	2. 본안사건(소송가액기준)		50%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	
	소송가액	산정기준		지급기준액
	1,000만원 이하	$[160\text{만원}] \times 1/2$		80만원
	1,0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$[16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가액} - 1,000\text{만원}) \times 5/100] \times 1/2$		80만원~180만원
	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$[36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가액} - 5,000\text{만원}) \times 3/100] \times 1/2$		180만원~255만원
	1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	$[51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가액} - 1\text{억원}) \times 1/100] \times 1/2$		255만원~705만원
10억원 초과	$[1,41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가액} - 10\text{억원}) \times 0.5/100] \times 1/2$	705만원~		
	3. 상고심 및 환송심(본안심리)	본안사건의 1/2이내	"	
행 정	1. 신청사건	20만원이내	없음	
	2. 본안사건 ○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있는 경우 ○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없는 경우	민사소송에 준함  65만원이내	민사소송에 준함  "	
	3. 중요사건	150만원이내		
기타 소송 비용	1. 인지대 : 실액 2. 송달료 : 실액 3. 검증비 : 실액 4. 감정료 : 실액 5. 출장여비 :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6. 기타비용 : 실액			

【별지 제1호서식(제8조 관련)】

소 송 기 록 대 장

사 건 명		주무부		소 장 접수일		20 . . .		신 청 방 안	방 침 결 정	내 용 일 자
신 청	사건번호	신청인	신청인	피신청인	피신청인	변론 상황	대리인선임일 :	결과 및 조치		
		대리인	대리인	대리인	대리인					
제 1 심	사건번호	원 고	원 고	피 고	피 고	변론 상황	대리인선임일 :	결과 및 조치		
제 2 심	사건번호	항 소 인	항 소 인	피 항 소 인	피 항 소 인	변론 상황	대리인선임일 :	결과 및 조치		
		대리인	대리인	대리인	대리인					
제 3 심	사건번호	상 고 인	상 고 인	피 상 고 인	피 상 고 인	변론 상황	대리인선임일 :	결과 및 조치		
		대리인	대리인	대리인	대리인					
청 구 요 지						비				
사 건 개 요 (피고원인)						고				

※ 선고일, 판결주문, 판결문 수령일 등을 결과 조치란에 기입

※ 증인사항, 수임료지급, 강제집행 등 사항은 비고란에 기입

【별지 제2호서식(제12조 관련)】

20   년   제       호

## 소   송   위   임   장

당사자 (원고)

(피고)

사건명

계속청

위 사건에 관하여 (재)김해시복지재단은

(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인) :

주 소 :

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.

1.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
2. 「민사소송법」 제82조 제1,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

주 소 :

위임인 : (재)김해시복지재단

위 대표자이사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법원 귀중



【별지 제3호서식(제12조 관련)】

##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원

1. 사 건

2. 당 사 자

원 고

피 고

3. 법 원

법원

4. 소송대리인

소 속

성 명

위 사건에 관하여 「민사소송법」 제88조 제1항에 의거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위 ○ 고

(재)김해시복지재단

위 대표자 이사장 (인)

법원 귀중

【별지 제4호서식(제13조 관련)】

## 소송수행결과 보고서

원고 피고 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
소송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구 분	원 고	피 고
주 장 사 실		
입 증 사 실		
다음변론기일		

첨 부 : 관계증빙서류

소송대리인 (인)

(재)김해시복지재단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5호서식(제14조 관련)】

## 서 약 서

소직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「(재)김해시복지재단 소송업무규정」 제14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사 건 명

원 고

피 고

년 월 일

서약서 소 속

직 명

성 명 (인)

(재)김해시복지재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6호서식(제20조 관련)】

# 청 구 서

일금

원정

원금

원

이자

원

법원 호 사건 [원고 , 피고 (재)김해시복지재단] 에 관하여  
(가집행 선고부, 승소확정) 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정히 청구함

년 월 일

위 청구인 : 성 명 (인) 주민등록번호  
(원고) 본 적  
주 소

위 청구인 : 성 명 (인) 주민등록번호  
(대리인) 본 적  
주 소

(재)김해시복지재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7호서식(제20조 서식)】

## 합 의 서

원 고

피 고

위 양인은 법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호 사건에 대한 판결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중

원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피고는 위 판결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중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을

년    월    일까지 지급한다.

2. 원고는 판결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.

당사자 원 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피 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(재)김해시복지재단 이사장 귀하